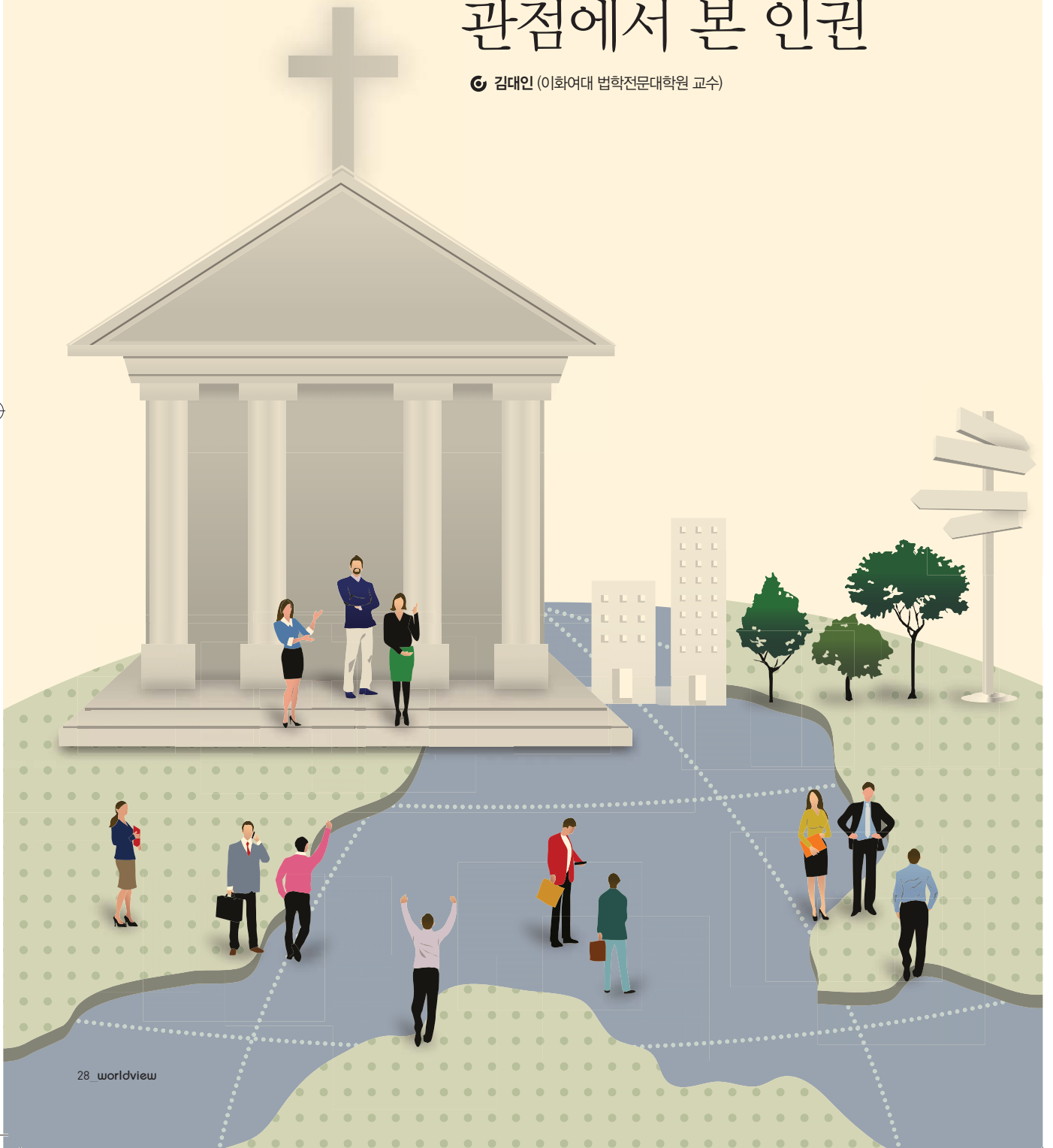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본 인권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보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장애인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인권이 결국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 인권과 관련한 선진국에서의 입법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성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는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들과 관련한 오해들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해보도록 하겠다.

II. 인권은 비기독교적 개념인가

첫 번째 오해: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하는 것이며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위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주장’(Selbstbehauptung)이며 인간 죄성의 발로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이다”라는 점도 이야기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창 1:27)라는 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1. 독일기본법은 독일의 헌법에 해당한다. 독일기본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기본법 제1조(인간존엄의 보호) 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③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법으로서 입법, 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2. 칼 라렌츠 저, 양창수 역, 정당한 법의 원리, 박영사, 1995. 참조.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연혁적으로는 독일기본법(Grundgesetz) 제1조¹를 본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기본법 제1조는 기독교적인 근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 독일기본법에서 제1조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나치시대에 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며 나치에 저항했던 바르멘선언과 같은 기독교정신이 제1조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우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인권은 기독교적 근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을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III. 서구선진국의 법을 우리나라가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가
두 번째 오해: “서구선진국의 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선진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세계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한 리처드 미들턴(Richard Middleton), 브라이언 월쉬(Brian Walsh)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나,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의 「창조, 타락, 구속」을 보면 기독교세계관을 크게 두 가지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조-타락-구속’과 ‘구조와 방향의 구별’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죄의 영향으로 피조세계가 타락했으며,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조세계를 구속해가신다는 전체 틀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구조’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로서 선한 것이며, 죄의 영향으로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방향의 구별은 선한 피조세계와 악한 피조세계가 구별된다는 이원론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독교세계관의 기본틀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의가 있고, 미들턴이나 월쉬도 나중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보완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기독교세계관의

기본틀이 인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다는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학분야를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가장 선진적인 법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들의 법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면 이 자체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선진국들이 가장 진화의 최첨단에 존재하므로 우리도 열심히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곤 한다.

그러나 기독교세계관의 도식 중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게 된다. 물론 구속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예를 들면 인종차별이 철폐되어가는 추세)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서구선진국의 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경향이 과연 타락의 방향인지, 구속의 방향인지를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서구선진국의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볼 때는 이 안에 존재하는 타락의 방향과 구속의 방향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같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되지만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와 ‘직장 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IV.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하는가

세 번째 오해: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립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일체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다종교사회에서 국가가 종교문제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축소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채플 등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리고 채플의 필수과목화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Monsma 등의 최근 연구³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호주, 영국, 독일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미국의 사례만이 소개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세를 징수하고 있는 독일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미국과 상이함을 잘 보여준다.

‘종교문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명제도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위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중립성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결과적으로 우선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도 하나의 종교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식의 접근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특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권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할 경우에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원칙이나 국가의 중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교교육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이상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두식 교수는 인권에 대한 저서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인권감수성의 출발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인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에게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자의 입장에 서기 전에, 상대방의 고통에 귀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

3. Monsma, Stephen & Christopher Soper, *The Challenge of Pluralism - Church and State in Five Democracies* (2nd ed.), Rowe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9.

4.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이야기-*, 창비, 2010. 참조.



김대인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다. 한동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법무법인 소명 소속변호사를 역임했다. CLF(기독교법률가회)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있으며 논문으로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

